

# 97년 개정 세법 안내(1)

## 1. 상속·증여세제의 개편

### ○ 개편배경

- 지난 '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의 소득수준의 향상, 인구의 고령화, 여성의 경제·사회적 지위향상을 반영하고
- 금융·부동산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고액재산가의 세금탈루 소지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.

### ○ 기본방향

- 세제를 단순·명료화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법령의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,
-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생활기반의 계속 유지를 지원하며,
-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
### ※ 종전의 상속세 계산체계

- 상속재산가액 - 공과금, 장례비, 채무 - 불산입 재산 - 기초공제 - (인적공제) - (물적공제) = 과세표준
  - └ 주택상속, 농지, 초지, 산림지, 어선 등
  - └ 배우자, 자녀, 미성년자, 연로자, 장애자
- 과세표준 × 세율(10~40%) = 산출세액

### <개정된 내용 요약>

구 分	종 전	개 정	비 고
기초공제	1억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인 : 2억 원</li> <li>가업상속인 : 3억 원</li> <li>영농상속인 : 4억 원</li> </ul>	
물적공제 (주택·농지 등)	1억 원	폐지	일괄공제 (5억 원) 선택 가능
인적공제			
• 자녀공제	2,000만 원 × 2명	3,000만 원 × (수제한 없음)	
• 미성년자공제	300만 원 × 20세까지 잔여년수	500만 원 × 20세까지 잔여년수	
• 장애자	300만 원 × 75세까지 잔여년수	500만 원 × 75세까지 잔여년수	

임현석/세무사

구 분	총 전	개 정	비 고
배우자공제	• 1억 + 1,200만원 × 결혼년수와 • 법정상속분인 일정비율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(10억 한도)중 선택	• 법정상속분인 일정 비율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 • 최소 : 5억 • 한도 : 30억	
금융재산공제	<신설>	금융재산가액의 20% 상당금액 ~ 2억	
장례비용	500만원 표준공제	1,000만원 한도 설정	
세율	5천만원 이하 10% 2억5천만원 이하 20% 5억5천만원 이하 30% 5억5천만원 초과 40%	1억원 이하 10% 5억원 이하 20% 10억원 이하 30% 50억원 초과 45%	상속 · 증여세의 세율을 통합

○ 적용시기: 1997. 1. 1부터 시행되며,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.

#### (가)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및 세제의 단순화

##### 1) 세율 및 과세구간의 통합

○ 상속·증여간 의사결정에 세부담이 중립적이도록 하면서 상속·증여세율을 통합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였습니다.

\* 상속·증여세 통합세율 운영국가: 미국·독일·프랑스

총 전	개 정
[상속세]	상속·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
5천만원 이하 10%	1억 이하 10%
2억5천만원 이하 20%	5억 이하 20%
5억5천만원 이하 30%	10억 이하 30%
5억5천만원 초과 40%	50억 이하 40%
[증여세]	
2천만원 이하 10%	50억 초과 45%
1억5천만원 이하 20%	
3억 이하 30%	
3억 초과 40%	

##### ○ 개정된 세율표

과 세 표 준	세 율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
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2억4천만원 +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
50억원 초과	18억4천만원 +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

#### 2) 배우자 상속·증여공제제도의 보완

- 배우자간 상속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지분인 일정비율내에서는 과세하지 않고, 잔존배우자 사망시 과세하도록 개정하면서
  - 30억원의 한도 설정으로 고액의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까지 면세되는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.
- 또한 배우자 증여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한도(30억원)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(표 1).

#### 3) 상속공제제도의 개선

##### 가) 물적공제제도 폐지, 기초공제액 인상

- 물적공제제도는 폐지하고 그 대신에 기초공제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단순화하였습니다.

총 전	개 정
[물적공제 : 7종]	[물적공제 : 폐지]
[기초공제] • 1억원	[기초공제] • 일반인: 2억원 • 가업 상속인: 3억원 • 영농·영어·임업 상속인: 4억원

&lt;표 1&gt;

종 전	개 정
<p>1. 상속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1억 원 + 결혼년수 × 1,200만 원」과 법정상속지분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(10억 원 한도) 중 선택</li> </ul> <p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정상속지분인 일정비율(예 : 자녀 1인과 공동상속시 60%, 자녀 2인과 공동상속시 43%)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전액 공제 하되,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0억 원의 한도 설정</li> </ul> </li> <li>• 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정 상속지분인 일정비율 1/2 (예 : 자녀 1인과 공동상속시 30%)을 공제</li> <li>- 공제한도 : 15억 원</li> </ul> </li> <li>•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5억 원을 공제</li> </ul>
<p>2. 증여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년간 「결혼년수 × 500만 원 + 5,000만 원」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년간 「5억 원 공제」</li> </ul>

○ 이 경우에 가업 상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사업용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
- ※ 상속인 :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
- 가업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50%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 혜택

○ 또한, 영농상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 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
-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· 초지 · 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

#### 나) 인적공제의 단순화

○ 자녀공제를 연로자공제와 동일하게 전환하여 단순화하면서, 미성년자공제 · 장애자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(표 2).

#### 다) 일괄공제제도의 도입

○ 일정금액까지의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간편한 일괄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증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.

- 종전에는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항목별 공제(기초공제, 자녀공제, 미성년자공제, 연로자공제, 장애자공제)를 하였으나,
- 이번 세법개정시에는 일정금액까지

&lt;표 2&gt;

종 전	개 정
<p>[자녀공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인당 2,000만 원</li> <li>• 대상 : 2인으로 제한</li> </ul>	<p>[자녀공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인당 3,000만 원</li> <li>• 공제대상 자녀수 제한 폐지</li> </ul>
[미성년자공제] : 300만 원 × 20세까지의 잔여년수	[미성년자공제] : 500만 원 × 20세까지의 잔여년수
[연로자공제] : 남자 60세, 여자 55세 이상 • 3천 만원	[연로자공제] : 남녀구분없이 60세 이상 • 혼행유지
[장애인자공제] : 300만 원 × 75세까지의 잔여년수	[장애인자공제] : 500만 원 × 75세까지의 잔여년수

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일괄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현행 항목별 공제와 일괄공제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## <일괄공제액>

구 분	일괄공제 금액
일반인	5억 원
가입상속인	6억 원
영농·영어·임업상속인	7억 원

\* 그러나 배우자 단독상속(배우자 100% 상속)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선택이 배제됩니다(기초공제는 인정).

#### 라)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의 신설

-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이 양 성화되어 과세포차률이 높아지므로 금

융재산의 보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하면서

- 고액의 금융재산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공제한도(상속세가 비과세되는 10억 원의 20%)를 설정하였습니다(표 3).

#### 4) 연금과 유족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

-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 기준법 등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이나 각종 유족보상금에 대해 균인·교원 등의 유족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세 비과세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(표 4).

☞ 다음호에 계속

<표 3>

종 전	개 정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재산에 대한 20%의 공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금융재산의 범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·적금·신탁·예탁금·출 자금·보험금 등(최대주주 주식은 제외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• 공제한도 : 2억 원</li> <li>• 2,000만 원까지는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재산가액의 20%에 상당하는 금액이 2,000만 원 미 달시에도 2,000만 원 공제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
[상속공제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험금 1,500만 원, 실물신탁(금전신탁은 제외)은 700만 원을 상속세 과세 제외</li> </ul>	<폐 지>
[증여공제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험금 증여의제 과세 시 500만 원 공제</li> </ul>	<폐 지>

<표 4>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속세 비과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무원연금법,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교원연금법, 국민연금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퇴직금 대신 지급되는 유족연금, 유족연금 일시금, 재해보상금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음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업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유족에게 퇴직금 대신 지급되는 유족연금, 유족연금 일시금, 유족보상금 등</li> </ul> </li> </ul>

